

국가검정품 및 보관품 발췌기준 고시

가축위생연구소 고시 제 1993-1호

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
국가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췌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
시 합니다.

1993년 4월 22일

가축위생연구소장

1. 환생물질제제

협회 공문 한동협(기획) 제 93-102 호(1993. 5. 1.
참조)

2. 생물학적 제제

가. 제품별 발췌량

협회 공문 한동협(기획) 제 93-102호(1993. 5. 1.
참조)

나. 신제품이거나 기존 제품의 병당 포장단위가
다를 경우 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췌량은 검정기관이
정하는 수량에 의한다.

다. 검정품과 보관품을 발췌하여 각각 별도의 포
장지에 넣어 봉한 후 품명, 발췌일, 발췌수량, 발췌
자 성명등을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 등으로 표시
하여 개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라. 재시험, 검정사고 또는 공시품의 파손이 있을
경우 해당 검사소요 수량을 재발췌하여 국가검정에
사용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일로 부터 시행한다.

'93년 가축전염병 발생경보(제1호) 발표

농촌진흥청은 4월 26일자로 가축전염병 발생경보
(아까바네병, 소 유행열 및 돼지 콜레라 주의보)를
발표 하였다.

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국가검정 협조요청

가축위생연구소는 수입동물용의약품의 검정이 통
관전 국가검정으로 변경(통합광고 상공부고시
제 1992-49호 : 92. 12. 28.)됨에 따라 국내 도착전에
검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도착
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B/L에 물품도착을 증명하
는 표시(예 : 세관에서 날인한 'arrived')하여 국가
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.

동물용의약품중 생산부진 품목조사

최근 생산실적이 부진한 품목에 대하여 가축 방역
상 불요불급하게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품목과 수출
용 및 93년도에 판매가 활성화될 품목에 대하여 품
목보유와 생산부진 사유서를 제출 받았으며 품목보
유 사유가 없는 자진취하 품목에 대하여는 허가증을
취합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다.

구 분	업체수	품 목
생산부진 및 품목보유 사유서 자진취하 품목	37 25	304 84

부정유통 동물용의약품 조사

협회는 부정 유통 동물용의약품 조사사업의 일환
으로 부정 유통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일제조사를
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금년에는 수입 품
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양 사료첨가제 등을 수
입·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. 사례를 신
고코자 하는 모든분은 무기명으로 수시 협회에 제출
할 수 있으며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후 농림수산부에
보고하여 시정, 적정을 기할 방침이다.